	규정	문서번호	TWP-A313	
		제정일자	2014. 02. 25.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페이지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위원회
- 제3장 교육목표 수립 및 평가
- 제4장 졸업생역량 수립 및 평가
- 제5장 인증 교과목
- 제6장 학생지도
- 제7장 전입생 수용
- 제8장 졸업심사
- 부칙

작성부서	교무처	제정일자	2014. 2. 25.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학적주임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홍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	교학부총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규정

문서번호 TWP-A313


제정일자 2014. 02. 25.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 페이지 2/11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14. 02. 25.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규정 제정
1	2014. 0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심화과정 위원회 명칭 구체화('건축공학심화' 추가) - 이수체계 준수 조항 신설 - 설문조사 조항 신설 - 전입생 수용(학점인정, 학점인정 절차) 장 및 조항 신설 - 상담 조항 개정 - 조항 신설 등에 따른 조항 정비
2	2015. 04. 27	-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
3	2018. 0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면 개정 기획홍보처 → 기획처, 입학관리센터 → 입학처 학생처/취업지원처 → 학생취업처 - 전공주임교수 → 학과장 변경

	규정	문서번호	TWP-A313
		제정일자	2014. 02. 25.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6조의7(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운영)에 의거하여, 성과중심교육과 수요지향교육을 바탕으로 국제적 등가성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학기술교육인증제’라 함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이하 ‘공인원’이라 한다)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공학교육을 시행하는 제도로써 공학기술교육인증 취득을 준비하거나 유지하는 학과에서 시행하는 공학기술교육 제도를 총칭한다.
2. ‘인증학위과정’이라 함은 공인원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전공의 교육과정에 인증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증대상 학위과정 단위를 의미한다.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라 함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교육부에서 인가(고등교육법 제50조의2)하는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PD(Program Director)’라 함은 인증학위과정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5.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라 함은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의미한다.
6. ‘교육목표’라 함은 졸업생이 졸업 후 2~3년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의미한다.
7. ‘졸업생역량’이라 함은 인증 대상 학생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졸업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의미한다.

제3조(인증기준) 학위과정의 인증기준 운영은 공인원에서 규정한 KTC2009 인증기준에 따른다.

제4조(구성원) 학위과정의 구성원은 본 학과의 재학생(이하 ‘소속 학생’이라 한다), 학위과정의 소속 교원(이하 ‘소속 교원’이라 한다), 학위과정의 졸업생 및 산업체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5조(인증대상) 학위과정의 인증대상은 2014학년도 이후 (산업체 경력 없는) 건축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입학생들이다.

제6조(인증심사) 학위과정의 인증은 본 학과의 졸업기준을 만족하고 별도의 공학기술교육인증을 위한 이수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313	
		제정일자	2014. 02. 25.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페이지

제7조(학위명칭) 소속 학생은 졸업 시 ‘학사학위’를 받으며, 국문 학위 명칭은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영문 학위 명칭은 ‘B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Technology Honours’이다.<개정 2014.5.20.>

제8조(일반사항)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제9조(위원회) 학위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회, 건축공학심화교과과정위원회, 건축공학심화산학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4.5.20.>

제10조(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회) ①목적: 학위과정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인원의 공학기술교육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의 설치, 운영 및 개선을 통하여 소속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4.5.20.>

②임무 :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위과정의 전반적인 운영
2. 학위과정 운영규정 개정
3. 교육목표 수립, 평가 및 개선
4. 구성원(산업체, 졸업생, 재학생) 설문조사 및 분석
5. 졸업생역량 평가, 분석 및 개선
6.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평가 및 개선
7. 졸업심사 및 인증자격 판정


③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교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증학위과정 운영책임자(PD교수)가 임명한다.

④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회의: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⑥활동: 매년 구성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목표와 졸업생역량 달성여부를 파악한다. 교육목표의 개선은 매 4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며, 해당 주기 동안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목표를 수정한다. 또한 매년 CQI를 통하여 졸업생역량을 평가하며, 대학과 전공의 중장기발전계획을 평가하고 개선한다.

제11조(건축공학심화교과과정위원회) ①목적: 학위과정의 졸업생역량 달성을 위해 교과과정

	<h1 style="margin: 0;">규정</h1>	문서번호	TWP-A313	
		제정일자	2014. 02. 25.	
	<h2 style="margin: 0;">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규정</h2>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페이지

및 운영방안을 검토 및 개선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4.5.20.>

②임무 :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교과과정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교과과정 검토 및 개편
3. 교과목 포트폴리오 관리
4. 학생 포트폴리오 관리
5. 종합설계 교과목의 운영 및 개선
6.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현황 분석
7. 상담, 관찰 시스템 구축 및 결과 분석
8.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 평가

③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교원 2인 이상과 산업체 인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증학위과정 운영책임자가 임명한다.

④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회의: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⑥활동: 매학기 교과목 포트폴리오와 학생 포트폴리오를 검토 및 관리한다. 교과목 CQI를 통하여 1년마다 필요시 교과과정을 보완 및 개편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학위과정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또한 학생의 상담, 지도, 관찰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위과정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2조(건축공학심화학협력위원회) ①목적: 학위과정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교육을 소속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체의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4.5.20.>

②임무 :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목표, 졸업생역량 및 교과과정 자문
2. 심화현장실습 자문
3. 졸업생 취업 자문

③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교원과 학과 출신 졸업생이 다수 취업하는 산업체에서 경력 5년 이상인 인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증학위과정 운영책임자(PD교수)가 임명한다.

④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⑥활동: 매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수렴한 의견을 학위과정운영위원회와 교과과정위원회에 통보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313
		제정일자	2014. 02. 25.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제3장 교육목표 수립 및 평가

제13조(교육목표) 학위과정에서 졸업하고 2~3년이 경과한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학위과정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건축전공심화 능력 배양
2. 창의력을 갖춘 3차원 모델링 응용설계 능력 배양
3. 건전한 직업관과 협동 능력 배양

제14조(공개) 학위과정에서 수립된 교육목표는 학과 웹사이트와 학과게시판, 홍보물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여 학위과정의 구성원에게 공표되어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개선) 교육목표 개선은 매 4년 주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회에서 설문지 및 문항을 작성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매년 11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분석한다.<개정 2014.5.20.>
2.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분석결과, 구성원의 의견수렴, 건축공학심화산학협력위원회의 자문 및 의견을 바탕으로 매 4년 주기로 교육목표를 개선한다.<개정 2014.5.20.>
3. 교육목표의 개선은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교육목표는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등에 공표되어 학위과정의 구성원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평가도구) 교육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4년 주기로 교육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개선에 반영한다.

1. 졸업생 인터뷰
2. 졸업생 설문조사
3. 산업체 설문조사

제4장 졸업생역량 수립 및 평가

제17조(졸업생역량) 인증 대상 학생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졸업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다음과 같다.

1. 수학, 기초과학, 정보기술, 공학기술 등의 지식과 기술을 공학기술문제에 따라 선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규정	문서번호	TWP-A313
		제정일자	2014. 02. 25.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2. 현장 실무적인 공학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실험실습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결과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실험실습 결과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3. 현장 실무적인 공학기술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4. 현장 실무적인 공학기술문제를 연구조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5. 공학기술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6.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8.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
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1.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인식
12.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제18조(졸업생역량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학위과정에서 설정된 졸업생역량 달성을 위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19조(개선) 졸업생역량 개선은 매 2년 주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축공학심화교과과정위원회에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종합설계, 졸업시험, 학생포트폴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학기말에 평가한다.<개정 2014.5.20.>
2. 건축공학심화교과과정위원회에서는 분석한 결과를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회에서는 분석한 결과와 건축공학심화산학협력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매 2년 주기로 졸업생역량을 개선한다.<개정 2014.5.20.>
3. 졸업생역량의 개선은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졸업생역량은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등에 공표되어 학위과정의 구성원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평가도구) 졸업생역량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졸업생역량 달성도를 평가하고 졸업생역량 개선에 반영한다.

1. 종합설계 작품
2. 졸업시험
3. 학생포트폴리오

	규정	문서번호	TWP-A313	
		제정일자	2014. 02. 25.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페이지

제21조(졸업생역량 최소 성취기준) 학위과정의 인증과 졸업을 위해서는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졸업생역량 항목별 평가(채점) 기준에서 ‘중’이상의 등급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 졸업생역량 재평가 방안을 통해 건축공학심화교과과정위원회에서 재평가 후 졸업생역량 최소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개정 2014.5.20.>

제5장 인증 교과목

제22조(최소이수교과목 및 학점 필요조건) 학위과정 인증과 졸업을 위해 필수적인 교과 영역과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은 심화현장실습(4주 이상 3학점 이하)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5학점이며, 심화현장실습 혹은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의 결과물은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완성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에는 산업체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1(이수체계 준수) 학위과정 인증과 졸업을 위한 교과목 수강은 학위과정에서 설정한 이수체계(선수, 후수, 병수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5.20.>

제23조(수강지도) 학위과정 소속 학생들은 수강신청 시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담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지도

제24조(지도목적) 소속 교원들은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교수 배정) 학생취업처장은 전임교수에게 지도학생들을 배정하여야 하고, 전임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의 지도교수가 되며, 지도교수는 입학에서부터 졸업 때까지 연속하여 학생을 지도, 상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2.19.>

제26조(지도방법)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지도교수는 상담, 관찰,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제27조(상담) ①지도교수는 대면상담 및 전자메일, 학생행사나 전공행사 등의 방법으로 상담과 관찰을 할 수 있다.

②상담은 정기상담 외에 소속 학생의 상담신청에 의한 수시상담도 병행한다.<개정 2014.5.20.>

③지도교수는 상담한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5.20.>

	규정	문서번호	TWP-A313	
		제정일자	2014. 02. 25.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페이지

제28조(설문조사) ①졸업예정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매년 1회 시행한다.
 ②졸업예정자 설문조사는 졸업생역량의 달성도와 교과목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위과정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신설 2014.5.20.>

제29조(학생의무) ①소속 학생은 매학기 수강지도를 포함하여 지도교수와 2회 이상/1년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5.20.>
 ②소속 학생은 학과에서 실시하는 강의평가와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장 전입생 수용<신설 2014.5.20.>


제30조(학점인정) 건축공학심화교과과정위원회는 전입생(복학생, 전과생, 편입생)의 학위과정에 적합한 학점을 사정한다.
 ①복학생은 학위과정 이수신청을 하기 위해 기 이수 과목과 인증을 위한 과목에 관하여 지도교수와 상담하여야 한다.
 ②전과생의 전적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건축공학심화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정학기의 본 학위과정 교과과정 상의 과목명으로 인정한다.
 ③편입생의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건축공학심화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정학기의 본 학위과정 교과과정 상의 과목명으로 인정한다.<신설 2014.5.20.>

제31조(학점인정 절차) 학점인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전입생 중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건축공학심화교과과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점인정은 건축공학심화교과과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심사하고 학위과정 PD교수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4.5.20.>

제8장 졸업심사<개정 2014.5.20.>

제32조(주관위원회) 학위과정 졸업예정자의 졸업심사는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개정 2014.5.20.>

제33조(심사대상) 학위과정 졸업심사는 매 학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4.5.20.>

	규정	문서번호	TWP-A313	
		제정일자	2014. 02. 25.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페이지

제34조(졸업기준) 학위과정의 졸업을 위해서 소속 학생은 학위과정에서 제시한 최소이수교과목과 학점 필요조건 및 졸업생역량 최소 성취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5.20.>

제35조(졸업심사 절차) 학위과정의 졸업심사는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말 ‘성적처리가 완료된 시점’을 고려하여 심사일시를 택하여 졸업예정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개별 졸업예정자의 취업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수차례에 걸쳐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5.20.>

①졸업심사 평가표: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의 졸업자격을 갖춘 학생은 졸업심사 전까지 졸업심사 평가표([별표1])를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0.>

②심사위원: 졸업심사를 위하여 학위과정운영위원회는 소속 교원 중에서 최소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졸업심사를 실시한다.

③학생제출자료: 학위과정 졸업심사 시에 졸업예정자는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5.20.>

1. 졸업심사 평가표(교과과정 이수요건 사항)
2. 학생포트폴리오
3. 심화현장실습 혹은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의 결과물에 대한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
4. 성적증명서


④졸업 인증은 대학교의 졸업사정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제36조(졸업생역량 평가방법) 학위과정 졸업심사 시에 심사위원은 학생의 졸업을 판정하기 위하여 졸업생역량 12가지에 대해 평가한다.<개정 2014.5.20.>

제37조(졸업생역량 평가결과) 심사위원은 졸업생역량 달성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14.5.20.>

제38조(졸업생역량 달성도 목표) 학위과정의 졸업생역량 달성도 목표는 각 졸업생역량 항목별 달성도를 기준으로 전체 졸업생의 50% 이상이 ‘중’ 등급을 받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4.5.20.>

제39조(결과활용)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회는 졸업심사 및 졸업생역량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하며, 평가결과를 향후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개선에 활용한다.<개정 2014.5.20.>

	규정	문서번호	TWP-A313	
		제정일자	2014. 02. 25.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페이지

제40조(기타) 상기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개정 2014.5.20.>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14.5.20.>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졸업심사 평가표

대상학생 학번 : _____
 성명 : _____ (인/서명)

1. 이수학점 수 현황

학사학위과정의 졸업학점				
구분	공학기술 주제 ^{주1)}			총 이수학점
	일반 교과목(필수/선택)	심화현장실습(필수)	종합설계 교과목(필수)	
이수요구학점	9 (필수 3과목 7학점 포함)	3	3	-
이수학점 ^{주2)}				

주1) ‘공학기술 주제’는 심화현장실습(4주 이상 3학점 이하) 및 종합설계 교과목(capstone design)을 포함하여 최소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주2) ‘이수학점’란에 학생이 취득한 이수학점 수를 기입할 것

2. 필수 교과목 이수현황

구분	필수/선택	교과목 명	학점	이수여부 ^{주1)}	이수학점 (A+, B+ 등)	비고
공학기술 주제	필수	건축실무기본	2			
		현장실무응용	3			
		BIM설계스튜디오	2			
		BIM설계실무프로젝트 (capstone design)	3			
	선택	심화현장실습	3			
		설계실무스튜디오	2			
		건설관리실무	2			
		건축법규실무	2			
		구조실무스튜디오	3			
		시공실무스튜디오	3			
합계			25			

주1) ‘이수여부’란에 이수한 교과목은 ‘○’, 이수하지 않은 교과목은 ‘×’로 표기할 것

3. 학생 포트폴리오 및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 제출현황

구분	제출 시기	제출 여부
(1) 학생 포트폴리오	최종학기 14주	제출() / 미제출()
(2) 심화현장실습 혹은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의 결과물에 대한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	최종학기 16주	제출() / 미제출()

상기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 졸업심사 내역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건축공학심화학위과정운영위원장 : _____ (인/서명)